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1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전현희 · 홍기원 · 이건태
이성윤 · 황정아 · 이학영
유동수 · 서영교 · 김영환
염태영 · 김병주 · 강준현
문진석 · 박정현 · 김현정
최혁진 · 박홍배 · 김용만
박지원 · 김문수 · 김윤
장종태 · 허종식 · 이병진
권향엽 · 이광희 · 정일영
문금주 의원(28인)

제안이유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 · 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

고 국민권익을 대폭 신장시킬 수 있는 AI 국민신문고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이에 동 제정안은 AI 국민신문고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민원 등을 제기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마련(안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 1) 국민권익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 운영 · 관리의 책임을 지며, AI 국민신문고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2) 위원회는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문고의

데이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 3)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
- 다. AI 국민신문고의 이용(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1) 국민은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활용할 수 있음.
 - 2) 신청된 민원 등의 소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용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관기관을 조정 할 수 있음.
- 라. 처리 민원등의 사후관리(안 제14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기관이 AI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한 민원등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분석·점검할 수 있음.
- 마. AI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안 제16조 및 제17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AI 국민신문고에 정책참여 창구를 마련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바. 민원 등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안 제19조 및 제20조)
- 1)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등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음.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공된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사.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호(안 제22조)

국민권익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 운영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아. AI 국민신문고 이용 활성화 유도(안 제23조 및 제24조)

1) 외국인이 참여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와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포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5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AI 국민신문고”란 행정기관등에 대한 민원 · 국민제안 · 정책참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 ·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민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 · 3) · 4)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민원
 - 나.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국민제안

다. AI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처리되는 사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5. “정책참여”란 AI 국민신문고 안에서 국민, 공직자 등이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된 의제를 공개적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의제에 대하여 다른 국민, 공직자 등이 참여하여 의견 제시, 토론 및 견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AI 국민신문고 등의 데이터”란 AI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데이터와 행정기관등에서 관리·운영하는 민원등이 연계된 데이터를 말한다.
7. “민원등 데이터 분석시스템”(이하 “데이터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AI 국민신문고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말한다.
8. “AI 국민신문고 서비스”란 AI 국민신문고를 기반으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 가. 민원등의 처리와 그 결과의 통보
 - 나. AI 국민신문고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분석 및 분석 결과의 제공·활용
9. “AI 국민신문고 서비스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란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등을 처리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I 국민신문고 서비스의 이용·처리 및 제공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2장 AI 국민신문고의 설치·운영 및 관리

제4조(AI 국민신문고의 설치·운영 등) ① 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를 설치·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AI 국민신문고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하여 다른 행정 기관등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반설비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공동이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관리 인력 및 시설 등) ① 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AI 국민신문고 서비스 기본계획) ① 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 및 민원 등과 관련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AI 국민신문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 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I 국민신문고 운영의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2. AI 국민신문고 이용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3. AI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확대 방안
4. AI 국민신문고의 발전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5.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AI 국민신문고 및 데이터분석시스템 고도화 방안
6. AI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민원 등과 관련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7. AI 국민신문고 및 데이터분석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AI 국민신문고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AI 국민신문고 서비스 이용기관의 권한과 의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등의 적절한 처리와 소관기관 민원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AI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AI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한 민원등의 처리와 소관기관 민원등의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공유,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인공지능의 활용) ① 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의 데이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하여 AI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이 소관 민원등의 업무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 등을 최신 상태로 구축·관리하도록 기술적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차별·

편향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 등의 연계처리)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관계되는 통합적·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AI 국민신문고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2. 「행정심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시스템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이 개별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AI 국민신문고 서비스

제1절 AI 국민신문고의 이용

제1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개인별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거나 본인인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한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이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AI 국민신문고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민원 등의 처리에 지장을 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AI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3. 동일한 취지의 민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중복 제기하는 등 이용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민원등의 신청) ① 이용자는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등의 내용 작성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민원등의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처리기

관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우편민원 등의 AI 국민신문고 등록) ① 이용기관의 장은 우편 · 방문 · 팩스 등으로 접수된 민원등을 AI 국민신문고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원등의 신청 · 접수 ·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며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자에 대한 민원등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통지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주소 · 연락처 등을 AI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민원등을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대상 정보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는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이용기관의 조정)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민원등의 소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용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관의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위원회는 이용기관이 AI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처리한 민원등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점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석·점검 결과를 이용기관에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AI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능의 추가) ① 위원회는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AI 국민신문고에 새로운 기능이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정책홍보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AI 국민신문고에 새로운 기능이나 창구의 개설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AI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제16조(정책참여 창구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AI 국민신문고 등에 정책참여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참여는 정책토론, 설문조사, 전자공청회 등(이하 “정책토론통”이라 한다)의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정책참여 창구를 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원활한 의견수렴과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책참여 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책토론등의 실시)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정책참여 창구를 활용하여 정책토론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이나 제도의 수립·집행 또는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나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민이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직접 자신의 의견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정책토론등의 의제를 등록한 경우

제18조(정책토론등의 사후관리) ① 제17조제1호에 따라 정책토론등을 실시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정책토론등이 종료된 후 그 결과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AI 국민신문고 등에 등록하여 참여자 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토론등의 결과 나타난 국민의 의견이나 제안 등이 소관업무의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민원 등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제19조(데이터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 등의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데이터분석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민원 등 데이터 분석결과의 제공 및 활용) ① 위원회는 데이터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된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데이터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업무개선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데이터 분석결과의 제공 및 활용의 방식·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민원 등 데이터의 활용 지원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데이터의 분석 또는 관련 사업의 협력 수행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 현황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

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데이터의 공동 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민원등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민원 등 데이터의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안 및 보호 조치) ① 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 및 데이터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AI 국민신문고 및 데이터분석시스템의 운영에 수반되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정당한 권한 없이 반출하거나 변형·삭제하는 등으로 정보관리의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고의로 AI 국민신문고 및 데이터분석시스템의 시설·장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는 데이터 유출 및 기능 장애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수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제4장 AI 국민신문고 등 이용의 활성화

제23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 등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를 가진 외국인이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10조제2항의 이용자 등록이나 본인인증에 준하는 방법 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를 가진 외국인이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와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 홍보 등) 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 서비스에 대한 국민

과 이용기관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 등의 국

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AI 국민신문고 등에 관한 홍보

2. 기술 · 인력의 교류

3. 공동조사·연구 및 기술협력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별칙

제27조(별칙)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AI 국민신문고 및 데이터분석시스템의 시설·장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AI 국민신문고 및 데이터분석시스템의 운영에 수반되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정당한 권한 없이 반출하거나 변형·삭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제12조제3항(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